

6회 모의고사 강사 첨삭평

1. 문1

가. 숨은 쟁점 vs 무관한 내용

문제에서 직접 묻지 않았어도, 답을 좌우할 수 있는 논점이면 적어줘야 ⇨ 숨은 쟁점
반면, 문제에서 묻지 않았고, 답이 달라질 것도 아닌 내용이면 안 적어도 됨 ⇨ 무관한 내용

문1에서 채용승인취소가 처분이나 아니냐에 따라 답이 달라짐
⇨ 채용승인취소의 처분성은 숨은 쟁점 ⇨ 숨어 있어도 쟁점이 맞고, 적어줘야 ⇨ 가급적 구체적으로 (II. 로 독립시키고 일반론도 목차 나눠 쓰고 포섭도 목차 나눠 쓰기)

반면 행정소송법상 소 변경 (중에서 소종류 변경) 일반론은?1) ⇨ 이 사안은 민에서 항으로의 소변경 사안이므로 직접적 관련 없음 ⇨ 무관한 내용 ⇨ 안 써도 됨 (쓰더라도 조문 정도만 / 시간 없으니 자세히 안 쓰는 편이 좋음)

원고적격- 법무사 판례의 주요논점 중 하나이기는 하나, 이 문제에서는 직접적 관련성 적음
⇨ 일반론 길게 쓸 필요X. 안쓰거나 간단하게 쓰자2)

나. 시간부족 문제

답안 중

시간 부족으로 인해 2번까지 다 풀지 못하신 경우가 많음
⇨ ① 답안작성 연습을 계속해서 작성 속도 높이기 + ② 빨 거 빼고 쓰기

1) 답안작성 연습을 계속해서 작성 속도 높이기

가령 이번 6회 모고 모답을 열공한 다음, 모답 기준으로 쓰기 연습한 다음, 다시 시험 치면?
처음보다 시간이 훨씬 덜 부족할 것
- 작성 연습을 반복하면서 속도가 자연히 빨라짐

2) 빨 거 빼고 쓰기

목차 잡는 단계에서, 포섭 분량을 대략 가늠
⇨ 그 분량에 따라 포섭에 시간 할당
⇨ 나머지 시간을 일반론에 할당 - 할당된 시간에 맞춰, 일반론 중 어떤 걸 어느 정도로 쓸지

1) 행소법상 소종류 변경은 행정소송 간의 소변경
2) 단, 민 ⇨ 항 소변경에서, “항으로 제기해도 소송요건 불비 명백해 어차피 부적법이라면 소변경이나 이송 안하고 강 각하” 부분에서, 항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췄느냐와 관련하여 ‘...하므로 원고적격 갖췄다’ 라는 식으로 적는 것은 의미 있음- (다만 이 판례에서 항으로서의 소송요건과 관련해서까지 원고적격을 논하고 있지는 않고) 모답 정도로 적으면 될 것으로 보임

(어떤 걸 뺏지) 결정

⇒ 포섭에 직결되는 일반론을 살리고, 직결 안되는 일반론을 축약/생략

- 쓸 거 많으면, 사안 해결에 직결되지 않는 일반론은 과감하게 빼버리자
-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빼기가 아까워 - 그러나 그거 빼는 대신, 직결 판례 & 포섭을 더 많이 씬으로써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하자!!! - **소탐대실** 하지 말자

가령 2번에서 기속력 일반론, 기판력 일반론은 빼기로 결정 ⇒ 이거 쓸 시간을 벌어서, 기속 vs 기관 판례 & 포섭을 풍부하게 쓰면 훨씬 고득점 가능!!!

3) 관련하여- 안써도 되는 글자는 쓰지 말자

답안 중

부산지방법무사회가 乙법무사 사무소 직원 甲에게 행한채용승인취소가 ~

라는 식으로 쓰신 경우들 있음

그러나 문제 자체에서 이걸 “이 사건 채용승인취소”라고 지칭함

- 답안에 강 “이 사건 채용승인취소”라고 써도, 뭐 말하는지 출제자가 알아봄
- 강 “이 사건 채용승인취소”라고 쓰면 뒀- 시간 절약!!!

다. 변경할 항 의 종류

이 문제에서 처음 제기한 민소가 무효확인 이니

항 으로 변경할 경우도 무효확인소송으로만 변경?

아닐 것

- ① 항 으로서의 무 는 하자 중대명백해야 ⇒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많지 않음
갑이 항 으로 가야 함을 알았을 경우 항 중에서 무 로 갔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
- ② 법무사 판례 자체도 취 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제소기간까지 언급함

모답처럼 쓰는 것이 무난해 보임

라. 문학판검

민에서 항으로의 소변경은 이 문제의 핵심 쟁점

⇒ 문학판검의 예를 갖추어 써주자 + 판례를 잘 써주자

(기본서대로 쓰면 됨)

마. 추상적, 구체적인 일반처분?

일반적- 일반인에 대한 것- 반대말은 개별적(개별인에 대한 것)

추상적- 언제 어디서나- 반대말은 구체적(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)

추상적이면서 구체적일 수 없음

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일 수는 있음- 일반처분

바. 채용승인 취소의 상대방은 갑?

법무사 을이 '갑을 채용하겠으니 승인해 달라'고 채용승인 신청

⇨ 채용승인의 상대방은 을 / 채용승인거부의 상대방도 을

⇨ 채용승인 했다가 이걸 직권취소- 을이 받은 채용승인을 취소- 을이 상대방

직접 상대방은 을이나,

갑은 채용승인거부, 취소로 직원 못 되게 되는 불이익 입으니,

갑도 원고적격 인정

사. 부산지법에 항고소송 관할 있나?

답안 중

부산지법에 항고소송 관할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 쓰신 경우 있음

그러나 부산지법(합의부)에 항고소송 관할 있으므로 나눌 필요 없음 ⇨ 모답처럼 쓰면 됨

기본서 257면

2. 전속관할과 임의관할

- 전속관할: 어느 사건에 관해 특정 법원만 배타적으로 갖는 관할
-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, 행정법원을 설치한 서울특별시에서는 행정법원만이,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만이 행정사건을 관할할 수 있음(예외적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행정사건을 담당함) ⇨ 이를 위반하면 전속관할 위반이 됨
- 임의관할: 당사자의 합의(합의관할), 상대방의 변론(변론관할, 응소관할)에 의해 다른 관할이 인정될 수 있음

2. 문2

가. 기속력 관련: 기사동

법평구기사사기동:

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해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지에 따라 결정한다(X)

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해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한다(O)

⇨ 법평구기사사기동

나. 기속력 관련: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

“기속력 하면 재처분의무랑 간접강제지! 그러니까 이 문제에도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를 강조해 주자구!”

⇨ NO!

재처분의무 = 거부절 (취무취무)

간접강제 = 거취 부

이 문제는 거부절 아니므로 재처분의무 인정 안되고

거취 부 아니니 간접강제도 인정 안됨 (재처분의무부터 없으니 재처분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도 안됨)

“거부절 중 [절]은 될 수도 있잖나? 절차 위반을 이유로 감차명령 취소판결/무효확인판결 해서 확정되면 재처분의무 있잖나?”

⇨ NO!

거부절 중 [절]은 **신청에 따른 (신청 받아주는)** 처분이 절차위반으로 취소/무효확인 확정된 경우!

이 사건 감차명령은 침익처분이지,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주는 처분 아님

- ①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취무- 거부절 의 [거]
- ② 신청 받아주는 처분인데 절차위반으로 취무- 거부절의 [절]
- ③ 신청에 거부조차 안 하고 무응답(부작위)로 있던 거에 부- 거부절의 [부]

다. 기판력 관련: 소송물

답안 중

종전처분의 소송물은 07. 11. 도급제형태 운영의 위법성

이 사건 처분의 소송물은 '06. 7.~2010. 9. 임대료 지급받는 방법으로 운영한 것의 위법성'

이라고 적으신 경우 있음

그러나 소송물은 소송에서 문제되는 것- 처분의 소송물X, 소송의 소송물

<모답>

이 사안에서 전소는 종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은 '종전처분의 위법성 일반'이고, 후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서 그 소송물은 '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일반'이다.

3. 모고 점수 관련

열심히 공부하는데 모고 점수는 개판이다ㅜㅜ

⇨ 괜찮다

⇨ 푸쉬킨의 시도 있음

“모고 점수가 그대를 속일지라도

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”³⁾

“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

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”

⇨ 현재 모고 점수는 슬프지만

미래에 받을 실전 점수는 완전히 다를 것

자신 있게 밀어붙이자!!!

3) 원래 “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”, “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”로 소개되기는 하나, 모고점수 받는 것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, 삶의 일부이므로, 결국은 포함됨
원작자의 의도가 “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(단 모고점수는 제외)”는 아닐 거임